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사 건 99나832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김 상 태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외6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1심판결의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포경위, 성남 남부경찰서로의 이송경위, 성남남부경찰서에서의 구금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최초 사건발생이후 원고가 진정,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 원고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과정, 여러 기관에서의 상담과정에서 일관되고 있는 것입니다(갑제8호증의1, 9, 11, 12, 15호증 각 참조). 또한 갑제17호증은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을 당시에 원고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두고자 가지고 있던 성남지방노동사무소의 공문에 메모를 해 둔 것입니다. 갑제17호증을 보면, 원고의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137-070)

변호사 河昇秀 李相勳

TEL : (02)587-9400
FAX : (02)587-9373

이미 고문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91노976 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문사건뿐만 아니라 본 사건과 같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제3의 증인이 있기 어려운 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을 믿을 지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 서울고법 판결은 형사사건에서의 판결인 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가능하였다면, 본건과 같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의한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또한 원고는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바, 1심에서는 벌금 10만원이 유지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3만원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도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결이 있으므로, 1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9. 12. 7.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이 상 훈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6부 귀중